

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2007 - 제50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6. 8 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현행 사천시가 직접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혜대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운영 대상시설

1) 수혜자 : 5,846명(2007. 1. 1.현재)

(단위: 명)

구분	총계	지체	시각	청각언어	정신지체	뇌병변 (중풍)	발달장애 (지폐증)	기타	비고
계	5,849	3,174	547	665	436	479	19	529	
중증	1,729	465	94	228	319	289	14	320	1.2급
경증	4,120	2,709	453	437	117	190	5	209	3~6급

※ 기타(정신, 신장, 호흡기, 간, 안면, 장루, 간질 등)

※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: 1,507명(25.8%)

2)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
- 위치 :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-17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05. 9. 1. ~ 2006. 7. 13.
- 사업비 : 3,300백만원(국 450, 도 1,025, 시 1,825)

- 부지조성 : 1011백만원(토지 681, 지장물 330)
- 건축비 : 2,289백만원(건축 2,176, 설계·감리 등 113)

○ 시설규모

- 부지면적 : 18필지 9,767m²(2,954평)
- 건물면적 : 1,494.22m²(452평)(지하1층 : 183.42, 지상 1층 : 627.68, 지상2층 : 683.12)
- 주요시설

층 별	면적 (m ²)	주요 시설	비고
계	1,494.22	22개 시설	
지하1층	183.42	전기실(발전소), 물탱크실, 창고	
지상1층	627.68	안내실, 의무실, 치료실, 단기보호실, 방과후 교실, 수 치료실, 물리치료실, 식당, 자원봉사 대기실, 상담실	
지상2층	683.12	사무실, 프로그램개발실, 운동치료실, 강당, 휴게실, 언어치료실, 작업치료실, 심리치료실, 전산교육실(시각장애인 전산교육 등)	

3) 기 능

- 재활상담·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의료·직업·심리·사회교육·재활에 관한 사항
-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
-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
-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
○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

4) 년 소요예산 : 552백만원 정도

○ 소요액 내역별

(단위 : 천원)

계	인 건 비			시설운영비			
	소계	봉급	관리비	소계	공공요금	차량.시설 유지비	일반운영
552,024	489,638	418,090	70,548	62,386	32,386	20,000	10,000

○ 2007년도 예산 : 854,803천원

· 운영비 : 226,000천원(도 46,000 시 110,000 분 70,000)

· 기능보강사업비 : 628,803천원(도 200,000 시 200,000 분 228,803)

5) 시설종사자 정원 및 기구

○ 근거 :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[별표 4]

○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: 20명 이상

· 직제 표준안

구분	일반직						기능직			고용직
	관장	사무국장	1급	2급	3급	4급	5급	1종	2종	
직위	관장	사무국장	팀장(1~3급 중에서 정함) 및 팀원							

·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안(1국 4팀)

구분	계	관장	사무국장	사회복지사	언어, 물리, 심리치료사	특수교사	일반사무원	기능직	고용직
계	20	1	1	7	3	1	3	3	1

◎ 사회복지사 :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

◎ 치료사 : 언어1, 물리(전기,작업,운동)1, 심리(미술,놀이)1 치료사

◎ 특수교사 :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

◎ 기능직 : 운전원(대형1종) 2, 열관리기사 등 청사관리 1

◎ 고용직 : 조리원 등

나. 운영현황(직영)

- 1) 기 간 : 2006. 12. 3. ~ 현재 (6개월)
- 2) 근무인원 : 3명(담당공무원1, 자활근로 2명)
- 3) 프로그램 운영현황

구분	수지침	요가	상담	수화교실	열린학교	건강강좌	수치료
횟수	40회	40회	75회	1회	1회	4회	4회
연참여인원(명)	2,135	616	120	12	40	124	15

다. 운영상 문제점

- 필요인력 미채용(총액 인건비제)으로 정상 운영 곤란
- 공무원 중 자격증(물리치료,심리치료 등)소지자 부재, 자체인력 확보 불가
- 전문인력 미 배치로 인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곤란
- 시설운영 전담공무원 업무겸직으로 운영실적 미흡
- 인력 장비 미비로 장애인 이용회피

라. 대책방안

- 장애인복지사업 수행능력 우수법인 선정 운영위탁
- 재활치료 전문 및 운영인력 채용 정상운영(20명)
- 시설 및 장비확충 기능보강

3. 위탁운영 계획

가.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

○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

○ 사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제 8조

나. 시 기 : 2007. 8월 경

다. 방 법 : 위탁법인 공개모집

라. 위탁법인의 자격

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재정 능력, 사업수행능력, 공신력, 후원회 운영능력 등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원부담이 가능한 법인

마. 위탁기간 : 3년간(재 위탁 가능)

바. 위탁사무

- 『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』 제4조에 근거한 사무
-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
- 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비품 관리

사. 위탁조건

- 장애인복지법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
- 『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』 및 위·수탁 협약사항의 준수
- 『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』의 규정 준수
-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 사용금지
- 장애특성별(시각,청각,지체,정신지체,뇌병병 등) 필수프로그램 운영
-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

아. 위탁법인 선정 (9명이내)

○ 심사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 병행

○ 심 사 원 :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

※ 심의위원회 구성계획안 : 부시장(위원장), 시의원, 교수, 장애인단체 관계자, 사회복지대표협의체·실무협의회체 대표, 복지시설의 관계자 등

○ 심사내용

- 서류심사 : 평가조서에 의거 수탁응모 법인이 제출한 서류 평가

- 면 접 : 시설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답변 평가

자. 위탁법인 선정심사항목

- 법인설립의 취지 및 목적 ○ 재정 부담능력 유무
- 사업수행능력 ○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

차. 수탁법인 결정

- 수탁법인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과한 결과 최고 득점자(법인)
- 수탁법인선정 심사대상이 단일법인일 경우 총점대비 60%이상 득점 법인(미달할 경우 결격처리)

4. 기대효과

- 가. 시설의 운용의 효율성 제고
- 나. 장애인재활전문가 채용 배치로 시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활성화
- 다.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

5. 이후 추진일정

- 가.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: 2007. 7월
- 나.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(9명 이내) 및 심사 : 2007. 7월
- 다. 위·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 : 2007. 8월

관계법령 발췌서

○ 지방자치법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곤란자의 보호 및 지원 곤란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자·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

○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 (시설의 설치)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

○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

제23조 (시설의 위탁)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○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

제8조(위탁운영)①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③복지관의 위탁범위 및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.

○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.검사.검정.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.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.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

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
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위원회) ①수탁기관을 심사.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주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, 수탁기관 심사.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